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16
----------	-------

발의연월일 : 2025. 9. 24.

발 의 자 : 손 솔 · 전종덕 · 정혜경
윤종오 · 용혜인 · 김 윤
한창민 · 윤준병 · 박주민
김재원 · 서왕진 · 이주희
정춘생 · 고민정 · 김종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는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경영 효율성 등을 이유로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한편, 청년 미취업자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어 법률의 실효성이 낮아진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법률 제 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u>100분의 3 이상씩</u>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 ----- ----- ----- ----- <u>100분</u> <u>의 5</u>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② (생략)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삭 제>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u> <u>할 수 있다.</u>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u> <u>정에 따라</u> 정부가 중소기업체 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 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u>제1항 및 제2항</u>----- ----- ----- ----- ----- ----- -----.
--	---